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액에 반영하는 비용(안 제18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1687호, 2026. 5. 26. 공포)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때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지급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에 따른 비용 등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차등 지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함.

나.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안 제19조제1항, 안 제19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심사청구서에 해당 청구기간의 계약 이행 실적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안 제20조의2 신설)

공공정책급여비용이 계약의 내용과 공공정책 목적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해당 청구기간의 계약 이행 여부, 공공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및 그 정도, 청구된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심사결과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보내도록 함.

라. 당원병 환자의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안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안 별지 제19호의7서식 신설 등)

당원병 환자의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원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한 경우를 요양비 지급 사유에 추가하고, 그 재료를 판매하는 업소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준요양기관으로 정하며,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첨부 서류 및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의 위임사항을 정함.

마.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및 서류 보존(안 제56조, 안 제58조제3항 신설, 안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고 요양기관이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요양기관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계약서로 정함.

바. 인용 조문 및 서식 정비(안 별표 6, 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문 이동에 따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의 근거 조문을 고치고,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10회 → 12회, 2026. 9. 28. 시행)를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관련 서식에 반영하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7. 1. 1. 시행)에 맞추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서식을 정비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차등 지급액에 반영하는 비용) 법 제47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차등 지급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에 따른 비용 등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행청구단체”를 “대행청구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 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공공정책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이하 “공공정책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청구하려면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청구기간 내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이하 “공공정책급여비용 계약”이라 한다)의 이행 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방법,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서식·작성요령 및 그 밖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당 청구기간 내 공공정책급여비용 계약의 이행 여부

2.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적의 달성 여부 및 그 정도

3. 청구된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의 적정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심사평가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 및 해당 공공정책급여 실시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이 해당 공공정책급여 실시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의 방법·절차·주기,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의 서식, 그 밖에 공공

정책급여비용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당원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당원병 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3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3조제4항제2호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19호의6서식”을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35호서식”을 “제35호서식,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에 대

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4제3항”을 “제96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사목2) 본문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⑭ 중 “제19호의6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⑫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⑨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⑨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⑮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⑭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⑩ 중 “제19호의7서식”을 “제19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7서식을 별지 제19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앞쪽의 ④ 위임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임사항	1) [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 복막관류액 2) [ ] 가정용 산소발생기 [ ] 휴대용 산소발생기 3) [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4)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5) [ ] 인공호흡기 및 기본소모품 [ ] 선택소모품 6) [ ] 기침유발기 7) [ ] 양압기 및 소모품 8) [ ] 연속혈당측정기 [ ] 인슐린자동주입기 9) [ ] 산소포화도측정기 [ ] 소모품 10) [ ] 기도흡인기 11) [ ] 경장영양주입펌프 12) [ ] 당원병 소모성 재료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13) [ ] 출산비 ※ [✔]표시, 중복 표시 가능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⑬ 중 “10회까지”를 “12회까지”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56조, 제58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원병 환자의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당원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9호의7서식에 따라 작성한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은 해당 위임사항 및 위임기간의 범위에서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차등 지급액에 반영하는 비용) 법 제47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차등 지급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에 드는 업무량에 따른 비용 등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대행청구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 ①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공공정책

	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이하 “공공정책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청구하려면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청구기간 내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이하 “공공정책급여비용 계약”이라 한다)의 이행 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방법,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서식·작성요령 및 그 밖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0조의2(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당 청구기간 내 공공정책급여비용 계약의 이행 여부 2.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적의 달성 여부 및 그 정도 3. 청구된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의 적정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심사평가원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 및 해당 공공정책급여 실시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이 해당 공공정책급여 실시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

	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의 방법·절차·주기,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의 서식, 그 밖에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 략) <신 설>	제23조(요양비) ①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당원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8. (생 략)	② ---------- ---------- ---------- ----------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당원병 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③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2. 별지 제19호의8서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6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2. ---------- 별지 제19호의7서식----------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서류의 보존) ①·② (생략)	제58조(서류의 보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제96조의4제3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4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제외한다.	⑤ ---------- 제96조의4제4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	⑥ ----------

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4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제96조의4제5항----------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

현행	개정안
1.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1. (현행과 같음)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또는 같은 별표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 **제18조의4**제2항에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7. 0. 0.>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1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 보수)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 체류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 보수)(원)	자격 취득일(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부호	공무원·교직원 직종명/부호	직종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부호	보험료 부과구분(해당자만 작성)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광원: 상시 갱내종사 직종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임금대장 사본 등 나. 부원: 선원수첩 사본 등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상시 갱내 작업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자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2. 보수월액란에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 보수" 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 근로자의 보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0	0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서 월보수 80만원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0	0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0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0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에서 금품 지급)
54	0	x	0	0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0	x	x	0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0	0	x	0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0.경영 · 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 · 부서장)

011 의회의원 ·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 · 경영 · 금융 · 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 · 여행 · 숙박 · 음식 · 경비 · 청소 관리자
015 영업 · 판매 · 운송 관리자
016 건설 · 채굴 · 제조 · 생산 관리자

02. 경영 · 행정 · 사무직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 · 인사 전문가
023 회계 · 세무 · 감정 전문가
024 광고 · 조사 · 상품기획 · 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 · 경리 사무원
028 무역 · 운송 · 생산 · 품질 사무원
029 안내 · 고객상담 · 통계 · 비서 및 기타 사무원

03. 금융 · 보험직

031 금융 · 보험 전문가
032 금융 · 보험 사무원
033 금융 · 보험 영업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 · 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 · 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 · 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 · 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7 통신 · 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 · 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 ·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 ·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 ·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 · 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 ·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 · 방재 · 산업안전 · 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 · 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 · 법률 · 사회복지 · 경찰 · 소방직 및 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 · 기술 · 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2. 법률직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23. 사회복지 · 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4. 경찰 · 소방 · 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25. 군인

250 군인

3. 보건 · 의료직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 · 치료사 · 재활사
307 보건 · 의료 종사자

4. 예술 · 디자인 · 방송 · 스포츠직

41. 예술 · 디자인 · 방송직

411 작가 · 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 · 사서 · 기록물관리사
414 창작 · 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 · 영화 · 방송 전문가
417 문화 · 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2.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 · 여행 · 숙박 · 음식 · 경비 · 청소직

51. 미용 · 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 · 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52. 여행 · 숙박 · 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 · 선박 · 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4. 경호 · 경비직

541 경호 · 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 · 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 영업 · 판매 · 운전 · 운송직

61. 영업 · 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2 기술·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614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2. 운전 · 운송직

621 항공기 · 선박 · 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 호이스트 · 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7. 건설 · 채굴직

70. 건설 · 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 · 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 · 채굴 단순 종사자

8. 설치 · 정비 · 생산직

81. 기계 설치 · 정비 · 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 · 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 · 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 · 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 · 재료 · 설치 · 정비 · 생산직 (판금 · 단조 · 주조 · 용접 · 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 · 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 · 전자 설치 · 정비 · 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 · 전자 기기 설치 · 수리원
833 발전 · 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 · 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 · 전자 부품 ·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 · 전자 부품 · 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 · 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 · 수리원
842 방송 · 통신장비 설치 · 수리원

85. 화학 · 환경 설치 · 정비 · 생산직

851 석유 ·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 ·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6. 섬유 · 의복생산직

861 섬유 제조 · 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 · 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 식품가공 · 생산직

871 제과 · 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88. 인쇄 · 목재 · 공예 및 기타설치 · 정비 · 생산직

881 인쇄기계 · 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 · 펄프 · 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 · 목제품 제조 · 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 · 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 · 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쪽 중 5쪽)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종별부호	등록일(YYYY.MM.DD)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취득대상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6. 췌장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7. 0. 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당해 연도 총 보수액	전년도 총 보수액
								해당 연도		전년도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 의 사 항

공통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yyyy. mm. dd.(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를 포함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 시 :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 보수액" 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총 보수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총 보수액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신설 2026. 0. 00.>

요양비 지급청구서(당원병 소모성 재료)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요양비처방전 발행일/전자처방전 등록번호	. . . DM	④ 청구일수 일
⑤ 진료받은 사람 외 청구인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업소) (휴대전화)

⑥ 당원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판매금액)	준요양기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합계금액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⑦ 전자세금계산서			
	[ ] 채혈침	원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	⑧ 현금영수증			

⑨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준요양기관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⑩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의사의 요양비처방전(당원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다만,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진료받은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말합니다) 1부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 · 월 · 일로 적되, 전자처방전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의사가 발행한 요양비처방전에 기재된 당원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일수를 적습니다.
⑤ 진료받은 사람의 가족 또는 준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은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입니다.
⑥ 구입한 당원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를 하고, 구입한 소모성재료의 실제 구입금액(판매금액)을 적고, 준요양기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습니다. 구입금액(판매금액)은 진료받은 사람 또는 가족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과 세금계산서에 각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 ⑧ 승인번호란, 작성·거래일란 및 합계금액란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적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작성하는 경우 앞 8자리 숫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⑨ 요양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 준요양기관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에 적은 요양비 수령계좌와 일치해야 합니다.
⑩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요양비 지급	→	수령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받은 경우 적정성 및 사실관계의 확인 결과에 따라 요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전체개정 2026. 0. 00.>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 210㎜[백상지 80g/㎡]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3.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4.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6.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신고)서 처리	→	보수월액 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0. 00.>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 신청서 [ ] 해지 예정일 변경 신청서 [ ] 해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① 일련번호	② 건강보험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고지 유예 적용일	⑥ 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	⑦ 유예사유		⑧ 유예 해지 예정 변경일	⑨ 사유별 고지 유예 기간			⑩ 고지 유예 해지일	⑪ 해지 시 보수월액(원)	⑫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		⑬ 분할 납부 횟수
						코드	육아휴직 대상자녀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유예사유	시작일	종료일			연도	보수 총액(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고지 유예,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 또는 유예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유예 신청서"와 "유예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 신청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항목과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⑤: 휴직 시작일 등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유예 사유 코드**] 일반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 일반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82)의 경우에는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000000-0)를 기재합니다. 다만, 출산 전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합니다.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항목과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⑧: 변경된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을 적습니다.

※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부터 ④까지의 항목과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⑨: 사유별로 납입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전체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⑩: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적되, 해지일은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⑪: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⑫: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예 사유가 일반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적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적습니다.

※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은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이 “0” 원이어야 합니다.

⑬: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및 통보	→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신설 2026. 0. 00.>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문서번호			
급여 대상 (항목)		청구 대상 기간	
		계약 기간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연락처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관련 처분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처분의 내용	
이의 신청 항목	□ 실시 요건 충족 여부 □ 등급(점수) 및 성과 지표별 평가결과	□ 심사결정금액 □ 기타( )	
금액	심사결정금액 원	이의신청금액 원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관련 처분	고지 유무	고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이의신청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	→	수령
신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신설 2026. 0. 00.>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급여 대상 (항목)		청구 대상 기간	
		계약 기간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			
금액	심사결정금액 원	이의신청금액 원	차액(증감액) 원
처분 요지			
이의신청 취지			
결정 이유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